



제417회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 추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04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48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8조).

Ⅲ. 검토의견

1.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48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①「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1)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②「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③「제54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u>위원</u> 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u>아니한</u> 사람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위원</u> , <u>전문위원의</u> ----- ----- <u>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u> <u>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u>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7. 제54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제6호에----- -----사람 및 같은 항제7호에 따른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법」(이하 “법”) 제48조2)는 제1항 각 호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KBS 이사의 결격사유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 「방송법」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6가지임.

- 제1항제1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제1항제2호 「정당법」 제22조³⁾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항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항제4호 「공직선거법」 제2조⁵⁾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항제5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

3)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이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항제6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6)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법 제48조제1항제2호(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와 「방통위법」 제10조제1항제1호(당원)이 유사하고, 법 제48조제1항제3호(「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방통위법」 제10조제1항제3호와 동일함.
 - 법 제48조제1항제4호(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는 「방통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와 동일하고, 법 제48조제1항제6호(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는 「방통위법」 제10조제1항제6호와 동일함.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KBS 이사의 결격사유 (「방송법」 제48조제1항 각 호)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방통위법」 제10조제1항 각 호)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①「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7)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

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 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②'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③'제54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 ③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해당함.

○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인만큼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대통령 당선자 임명직인 고문·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하여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 공무원 등은 대통령과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 혹은 정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

화하자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입법사례(인권위, 권익위)⁸⁾에도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 검토 입장임.

-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자문·고문 역할을 한 자의 이사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존속 기간(30일 범위내)에 비해 3년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들어

8) 타 위원회 사례(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국민권의위원회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금융위원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인권위원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감사원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방송통신위원회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사 업무와 밀접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했던 정무직공무원의 이사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성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이러한 자격 제한이 생길 경우 이사회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KBS 의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및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자의 이사 자격 제한 관련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데,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존속하는 위원회에서 인수위 위원도 아닌, 전문위원 또는 자문, 고문의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후 3년간 이사 임명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인수위원회에서는 향후 새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교수·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을 상당 기간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게 규제한다는 것은 공사 최고결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배치될 수밖에 없음(참고로, 제20대(윤석열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외에 80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하였음.)
- 게다가, 인수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은 인수위원회 백서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임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경우에는 활동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단지 개별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후보자 결격사유에 관한 사전 확인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사후 결격 사유 확인 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인수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직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자가 3년 동안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사료됨.

■ 공사 업무와 밀접 관련성 있는 업무를 담당했던 정무직공무원 이사 자격 제한

-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특정 정무직공무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공사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함. 우선, 방송법 제54조는 공사가 해야 할 11개의 업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 해석이 모호함

- 또한 위와 같은 방송 관련 공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정무직공무원이라면 방송·통신 관련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사 결격사유는 오히려 이사회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게다가 가령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일정 시기 동안 공사 업무와 유관한 업무를 하고 십수년이 지나 퇴직한 경우에도 과거 공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3년 동안 공사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해당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사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으로서, 소탐대실의 입법이라 하겠음.
- 게다가, 방송 관련 다른 법률에 이사 또는 임원, 위원 등의 결격사유로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방송 관련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나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자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사례는 없음.

○ 종합해보면,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여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인권위, 권익위 등 타 입법사례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방통위원 및 방심위원의 결격사유에 유사한 사유를 추가하려는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2200249,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동일한 사유를 추가하려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05,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06, 민형배의원 대표발의)」가 국회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